

# 「재활용센터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3월 9일  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「서대문구 재활용센터」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

## 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, 現 재활용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(2015.4.30)로 인한 위탁사무의 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- 또한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함

## 3. 제안근거

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 【사무의 위임】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 【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】

-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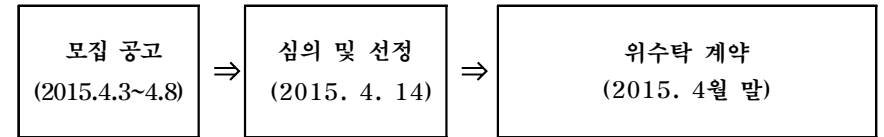
## 4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(중고 가전·가구)의 수거·수리·판매

나. 목 적

- 민간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재활용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관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
-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특성상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 활용
- 민간의 참여를 통한 위탁사무의 효율성 도모 및 전문성 강화

다. 수탁기관 선정절차



라. 위탁기간 : 3년

마. 소요예산 : 없음,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

## 5. 참고사항

-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인 24개 자치구 모두 재활용센터 사무를 민간 위탁 또는 민간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음.